

한 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이다. 이 제도는 직접적인 행정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정착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.

1) 환경마크제도 운영 목적

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덜 해로운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운동에 참여케 하고 생산자에게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토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환경적 영향을



우리나라 환경마크

기준을 마련하는 제1단계와 환경마크 사용 신청 및 심의를 위한 제2단계로 나눌 수 있다. 환경마크대상 상품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사용과정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하고 사용후 폐기과정에서도 분해가 쉽거나 회수가 쉬워야 한다. 그러나 상품속성상 그 자체가 건강에 유해하거나 화재, 폭발의 위험이 있는 이른바 본질적인 공해상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. 또한 식품이나 각종 제약품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때문에 역시 제외된다. 제1단계를 거친 대상상품군에 한하여 환경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제조단계에서 환경오염방지책이 적절한가, 사용후

환경 마크 제도

줄이게 하는데 있다. 즉 ① 소비자들이 환경상품을 선호하게됨에 따라 환경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게 되고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다. ②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전문가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선택시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다. ③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판매하게 하기 위하여 저오염 제품의 생산을 위한 지속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등에 그 목적이 있다.

2) 환경마크 인증 절차

환경마크인증은 대상상품군 선정과 인증

◆ 편집팀

폐기시 처리가 용이한가, 사용시 자원 또는 에너지절약형인가, 품질이나 안전성에 있어서 관련법규의 품질기준 및 규격(KS규격기준 등)에 합치되는가, 가격은 같은 종류의 상품에 비해 적절한가 등을 검토하게 된다.

3) 환경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

① 정부조달물품과 관련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. 환경부는 재활용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마크취득업체 중 자원재활용품 생산업체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환경마크인증상품은 정부조

달물품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다.

② 기업이미지 제고 :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환경마크 취득은 해당상품의 환경특성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적잖은 기여를 한다.

③ 민간단체의 협조 : 환경단체, 소비자단체들은 각종 발간물에 '이달의 환경상품'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환경상품을 소개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환경상품판매장을 마련하는 등 환경상품 사용 적극 권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.

4) 외국의 환경마크제도

1977년도에 독일이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한 이래 일본, 캐나다,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,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가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. 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 영국, 덴마크,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소비자의 60%이상, 일본 소비자의 80%이상 이 값이 비싸도 환경마크제품을 사용한다고 했다.

각국의 환경마크제도는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.

독일은 연방환경, 자연보호 및 핵안전부에서, 캐나다는 연방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한다. 스웨덴, 핀란드, 프랑스는 정부 표준 화기구에서 일본은 환경청의 지도를 받아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내에 환경마크 사무국을 설치하였다. 이들 나라는 환경마크 대상 상품군의 기준수립과 마크인증을 위하

여 환경전문가, 산업가 대표,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환경마크위원회를 두고 있다. 민간단체 활동이 활발한 미국은 정부차원의 통일적인 환경마크는 없는 대신 민간단체에서 Green Seal, Green Cross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. ◀



일본 환경마크



캐나다 환경마크



독일 환경마크